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4.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20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0. 4.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2020. 3. 16.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사 신축·이전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분리됨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통합과장이 통합하여 분장하던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업무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이 분장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출입국·외국인 소속기관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관 정원 12명의 존속기한을 2023. 4.30.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관리과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국적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를 “다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법무부령 제74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20년 4월 30일”을 “2023년 4월 30일”로, “2020년 5월 1일”을 “2023년 5월 1일”로 한다.

부 칙

부칙 <제000호, 2020.00.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출입국 · 외국인청 등)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u>국적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남부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의 관리과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국적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u>	제27조(출입국 · 외국인청 등)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u>국적 · 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u>
부칙<법무부령 제740호, 2011.5.1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2 의2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관 의 정원 중 12명은 <u>2020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5 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는 정원은 출입국관리주사 12 명으로 본다.</u>	부칙<법무부령 제740호, 2011.5.1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12 의2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관 의 정원 중 12명은 <u>2023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5 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는 정원은 출입국관리주사 12 명으로 본다.</u>

[별표 4]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
인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8조 및 제29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광진구·강남구(한국도심공항터미널은 제외한다)·강동구·동작구·송파구·성동구·서초구·용산구(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은 제외한다), 경기도 안양시·과천시·성남시·하남시 ※ 다만, 국적·난민과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추가로 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관할하며, 전자비자센터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을 관할하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외국인투자자·교수·정부초청 과학자 등에 대한 외국인등록·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별표 13]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	5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2021년 2월 28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38명 (6급 10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8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체류외국인 관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 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90명 (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3)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보호관찰소)	30명 (6급 5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10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4)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62명 (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5)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47명 (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13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6) 출입국사범 관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 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35명 (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7)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보호관찰소)	37명 (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8) 야간 교대근무	67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도소 및 구치소)	(6급 4명, 7급 6명, 8급 28명, 9급 29명)	
9) 난민심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16명 (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10)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32명 (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11)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보호관찰소)	52명 (6급 10명, 7급 14명, 8급 14명, 9급 14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2)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42명 (6급 6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3) 야간 교대근무 (교도소 및 구치소)	89명 (6급 9명, 7급 11명, 8급 33명, 9급 36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4)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 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 무소)	29명 (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5)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50명 (6급 19명, 7급 11명, 8 급 8명, 9급 12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6) 항만 국경관리(출입국·외국 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 소)	33명 (6급 11명, 7급 11명, 8 급 6명, 9급 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